

1. 예산총칙

2024년도 【본예산】

* 제1조 :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805,139,918	24,154,198
일반회계	계	708,141,980	21,244,259
특별회계	계	96,997,938	2,909,938
	공기업특별회계	13,696,541	410,896
	지방상수도사업	13,696,541	410,896
	기타특별회계	83,301,397	2,499,042
	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851,428	25,543
	의료급여사업	1,077,882	32,336
	농공단지조성사업	382,744	11,482
	중소기업육성자금	9,000,000	270,000
	일반산업단지조성	2,902,400	87,072
	하천골재채취근직영사업	5,214,856	156,44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,500	165
	농업발전기금	11,298,687	338,961
	수질개선사업	52,567,900	1,577,037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* 제3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4조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5조 :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